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 33호

이 조례 및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4월 2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1. 폐지사유

- ☐ 상위 자치법규인 「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」 전면 개정(2010.12.29.)시 「동 시행규칙」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세부사항(지원계획, 적용범위, 지원대상, 지원신청, 사업시행,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)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 「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은 사실상 존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

2. 주요내용

- ☐ 「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폐지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주택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여관동), 문의전화: 3396-5713, FAX: 3396-9087, 메일:miky0529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